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인 천 광 역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

의안 번호	1141
----------	------

제출연월일 : 2014. 0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출근거 및 사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 사유 :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3. 12.) 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결과,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시설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함.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권고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광장)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천㎡)	집 행			미집행			
			개소	면적 (천㎡)	%	개소	면적 (천㎡)	%	
계	1,340	55,368	1,183	39,690	71.7	157	15,678	28.3	
공간 시설	공원	364	45,474	285	30,770	67.7	79	14,704	32.3
	녹지	920	9,466	848	8,594	90.7	72	872	9.3
	광장 (일반, 미관)	56	428	50	326	76.1	6	102	23.9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천㎡)	비고(관리청 의견)
계		65	13,892	
공 원	소계	56	13,199	
	도시자연공원	3	5,737	존치 : 3
	근린공원	48	6,530	존치 : 41, 해제 : 7
	체육공원	1	22	존치 : 1
	역사공원	2	163	존치 : 2
	산림휴양공원	1	339	존치 : 1
	도시생태공원	1	408	존치 : 1
녹지(완충녹지)		9	693	존치 : 2, 해제 : 7
광장(일반,미관)		-	-	

다. 해제(축소) 권고 내용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집행부 의견	권고사유	권고 내용
	계	4건	A=523,944㎡			
완충 녹지	대로 1-502 호선변	중구 운북동 일원	A=211,504㎡	해제	기존도로까지 완충녹지로 조성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 발생이 우려되어 완충 녹지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 에 대하여 우선 해제 검토	부분 해제
완충 녹지	대로 1-501 호선변	중구 중산동 일원	A=274,252㎡	전면 재검토	〃	부분 해제
완충 녹지	경인 철도녹지	남동구 간석동 일원	A=3,955㎡	해제	대체시설(방음벽) 설치로 완충녹지 기능 상실되어 해제 필요	해제
완충 녹지	동수녹지	부평구 부평동 634-1 일원	A=16,400㎡	부분 해제	미집행 구간 중 예림원 부 지공간에 지정된 경관녹지 에 대해 장애우 복지를 위 해 일부 해제 필요	부분 해제

3.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의견

○ 수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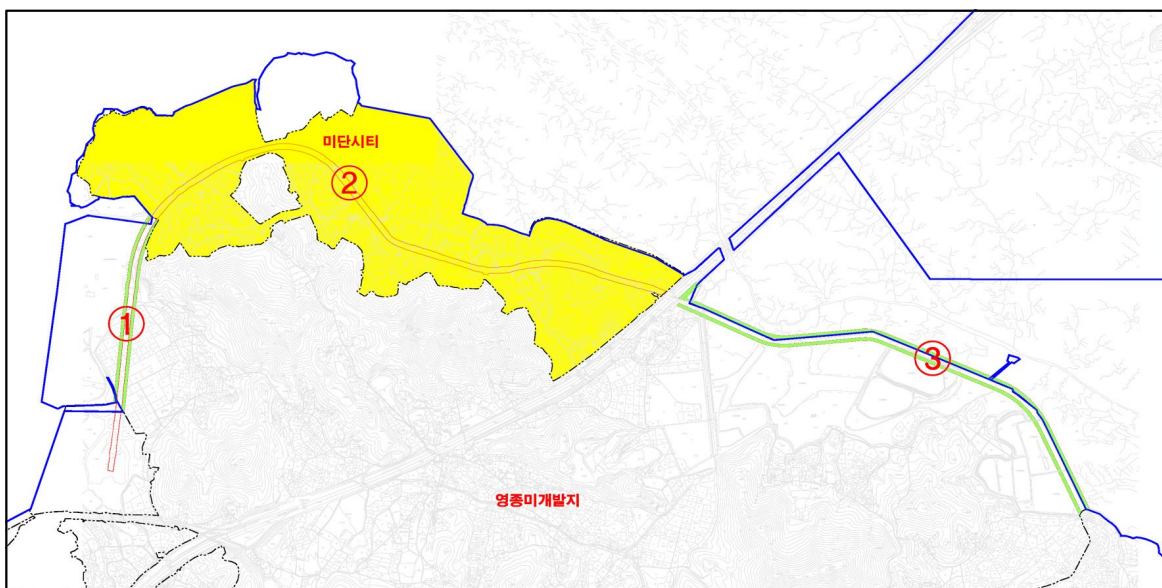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권고내용	수용여부	비고
	계	4건	A=523,944㎡			
완충 녹지	대로 1-502 호선변	중구 운북동 일원	A=211,504㎡	부분해제	수용	해제입안 준비중
완충 녹지	대로 1-501 호선변	중구 중산동 일원	A=274,252㎡	부분해제	미수용	-
완충 녹지	경인 철도녹지	남동구 간석동 일원	A=3,955㎡	해제	수용	해제입안 준비중
완충 녹지	동수녹지	부평구 부평동 634-1 일원	A=16,400㎡	부분 해제	수용	해제입안 준비중

4. 미수용 사유 소명

가. 완충녹지(대로1-501호선변) 현황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고
완충 녹지	대로 1-501호선변	중구 중산동 일원	A=274,252㎡	

- 대로 1-501호선은 미단시터를 관통하는 노선(B=35m, L=11,308m)으로 노선변으로 녹지가 결정되어 있음
- 현재 미단시터 내 녹지(②)는 조성중이며, 그 외 구간(①,③)은 미조성



나. 미수용 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 또한 도로변의 보존·관리 및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미조성 완충녹지구간은 대부분 도로 미개설 구간으로 완충녹지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 영종지역(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관리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녹지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 우려

다. 향후 계획

- 중구청에서 영종지역(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예정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맞춰 녹지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위치도

위 치 도

